

중대재해센터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판결 및 시사점

2025. 7. 17.

법무법인(유) 율촌

정유철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의 최근 판결 동향 및 시사점(1~6)

지난 기고(5) 이후에도 법원은 계속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다수의 판결들을 선고했다. 최근 파악된 판결들까지 합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현재까지 약 46건 이상의 1심 판결이 선고됐고 그 중 알려진 유죄 판결은 41건, 무죄 판결은 5건에 이른다(2025. 6. 30.자 기준). 이에 본 기고에서는 지난 기고 이후 새롭게 선고된 판결들 중 특히 주목할 만한 판결들을 중심으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판결이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현황(2025. 6. 30.자 기준)

선고일	업종	재해 유형	형량(원청 대표이사, 중처법 기준)
230406	건설업	떨어짐	징역 1년 6월(집유 3년)
230426	제조업	(물체에)맞음	징역 1년(실형) *대법원 확정
230623	건설업	(물체에)맞음	징역 1년(집유 3년)
230825	건설업	끼임	징역 1년(집유 2년)
231006	건설업	(물체에)맞음	징역 1년 6월(집유 3년)
231012	공동주택관리업	떨어짐	징역 8월(집유 2년)
231018	건설업	무너짐	징역 1년 2월(집유 3년)

⋮

현재까지 선고된 판결 동향을 종합해보면 원청과 하청의 유, 무죄의 결론이 대부분 함께 가는 경우가 많았다. 원청과 하청의 책임이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돼 왔기 때문에, 원청에 대하여만 전부 무죄가 선고된 위 판결은 외관상 이례적인 것처럼 보인다. 원청이 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사고 발생에 예견 가능성이 없다면 하청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당연히 함께 형사 처벌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유죄 판결이 선고된 판결들에서도 유의미한 법리가 실시 됐다. 대전지방법원은 2025. 6. 13. 열사병에 관해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는 중대재해 유형의 범위가 확대된 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판결례가 쌓일수록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막을 수 있는 재해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메시지가 강조되고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컨센서스도 더욱 발전하고 있다.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기를 바라는 '요행'에 기댈 것이 아니라 경영진부터 현장의 작업자까지 모든 구성원이 재해 예방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 가는 것이 곧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처리 현황 (25. 6.30. 기준)

검찰 기소 77건, 불기소 22건

사고 발생 후 기소까지 대략 10~12개월 정도 소요

법원 선고 : 약 46건(무죄 5건 외 유죄), 실형 5건



중대재해법 처벌 ‘중소건설사’에 쏠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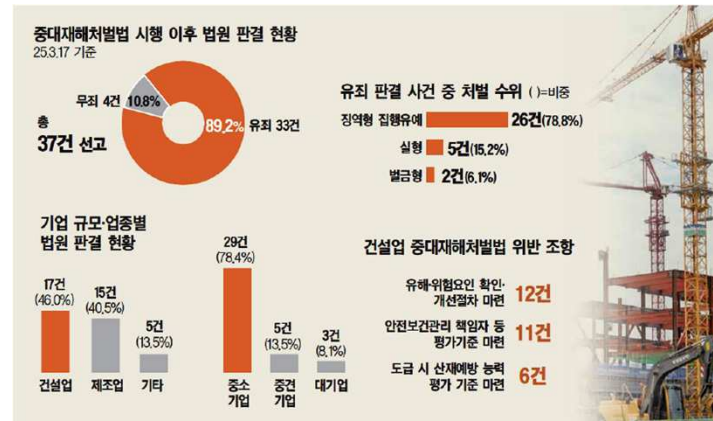
건정연, 중처법 판결 37건 분석

**중소 유죄비율 97%... 절반이 건설
징역형 집행유예 ‘최다’, 실형 5건
“안전인력 부족 중소사 대처 미흡”**

중소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용근로자의 투입이 많은 데다 복잡한 생산체계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이 어렵기 때문인데, 여전히 불명확하고 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3월 17일까지 선고된 판결 37건을 분석한 결과, 유죄 선고는 33건(89.2%), 무죄는 4건(10.8%)이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중 처벌 수위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26건(78.8%)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은 5건(15.2%), 벌금형은 2건(6.1%)이었다.



실형 선고 이유는 △사고전력 △동종전과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이었고, 형량은징역1~2년이었다. 무죄 선고 사유는 △공사금액 50억원미만으로 적용 미대상(건설업2건) △안전·보건확보 의무불이행과 사고발생간 인과관계 부재(1건) △과실 정도 대비 사고 책임 과도(1건)등이었다.

관련자와 함께 기소된 법인에 대한 벌금형 규모는 사건별로 500만원~20억원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사업장의 업종은 건설업이 17건(46.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15건(40.5%), 기타업5건(13.5%) 등의 순이었다.

건설업 판결을 보면 유죄 15건(88.2%), 무죄 2건 (11.8%)이었으며,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수준은 실형 1건(6.7%), 징역형의 집행유예 14건(93.3%)이었고, 법인 처벌수준은 벌금 1000만원~2억원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29건(78.4%)으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5건·13.5%), 대기업(3건·8.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의 유죄 비율은 96.6%(28건)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 (15건·53.6%)이 건설업이었다. 유죄판결 33건 중 중소 건설사 사건 비율이 45.5%로 절반에 육박했다.

건설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항으로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12건)’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평가기준 마련(11건)’이 많았다. 복잡한 하도급 구조로 운영되는 건설업 특성상 ‘도급시 산재 예방 능력 평가 기준 마련(6건)’도 다른 업종에 비해 위반 비율이 높았다.

홍성호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건설사에 대한 유죄 비율이 다른 기업 유형보다 높은 것은 인력·예산 부족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건설업 특성 때문”이라며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

[2025. 6. 30. 기준] 약 46건 이상

구분	기업(업종)	선고일	사고개요	형량(원청 대표이사)
제1호	건설업	'23. 4. 6.	근로자가 개구부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제2호	제조업	'23. 4. 26.	근로자가 방열판(무게 1.2톤)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	★징역 1년(실형, 법정구속)
제3호	건설업	'23. 6. 23.	구조물 높낮이를 조절하던 중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사고	징역 1년(집유 3년)
제4호	건설업	'23. 8. 25.	머리가 회전하는 굴착기의 후면과 담장 사이에 협착되었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사고	징역 1년(집유 2년)
제5호	건설업	'23. 10. 6.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90킬로그램의 철근에 맞아 사망한 사고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제6호	공동주택관리업	'23. 10. 12.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사다리에 올라 천장 누수방지 작업을 하다가 약 1.1미터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	징역 8월(집유 2년)
제7호	건설업	'23. 10. 18.	기숙사 굴뚝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무너진 구조물에 깔려 사망한 사고	징역 1년 2월(집유 3년)
제8호	제조업	'23. 11. 3.	독성화학물질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16명에게 급성 간염 등 증상 발병을 초래한 사고	징역 1년(집유 3년), 사회봉사 320시간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

[2025. 6. 30. 기준] 약 46건 이상

구분	기업(업종)	선고일	사고개요	형량(원청 대표이사)
제9호	제조업	'23. 11. 9.	띠강/철판에 허벅지를 베여 저혈량 쇼크로 숨진 사고	1년(집유 2년)
제10호	건설업	'23. 11. 17.	상수도 확장 공사 중 청소를 하던 하청종사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숨진 사고	1년(집유 2년)
제11호	건설업	'23. 11. 21.	지하 3층에서 환기구에 페인트칠을 하던 중 지하 4층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1년(집유 2년)
제12호	건설업	'23. 12. 21.	주차타워 지하에서 3톤이 넘는 무게의 리프트(차량운반기)가 상승하면서 하강한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한 사고	징역 6개월(집유 1년)
제13호	제조업	'24. 1. 16.	기계 설비 운전원이 골판지 가공 기계의 회전축에 윤활유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작업복이 회전축 사이에 말려들어 가면서 몸이 끼여 사망한 사고	1년 2개월(집유 2년)
제14호	건설업	'24. 2. 7.	약 11미터 높이의 철골보(철근골조)에서 볼트 조임 작업을 하던 중 외부 계단으로 건너가 준비물을 놓아두고 고소작업대로 다시 넘어오던 중 추락해 사망한 사고	1년(집유 2년)
제15호	제조업	'24. 4. 4.	다이캐스팅 기계의 내부 금형을 청소하던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여 두개골이 파열돼 사망한 사고	★징역 2년(실형) (총괄이사) 금고 1년6개월(실형)
제16호	건설업	'24. 4. 24.	철근절단기에서 발생한 누전으로 감전되어 현장에서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고	1년(집유 2년)
제17호	건설업	'24. 5. 2.	건출 작업중 돌음계단 중앙 개구부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1년(집유 2년)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

[2025. 6. 30. 기준] 약 46건 이상

구분	기업(업종)	선고일	사고개요	형량(원청 대표이사)
제18호	제조업	'24. 7. 4.	찬넬(4.37t)을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용접 작업 중, 인양한 섬유벨트가 끊어져 낙하하여 사망 및 상해를 입은 사고	1년6월(집유 2년)
제19호	건설업	'24. 8. 8.	1.8미터 높이 이동식비계 위에서 건물 중 벽체 일부 철거 작업 중 떨어진 콘크리트가 이동식비계를 충격하여, 작업자가 떨어져 사망한 사고	1년(집유 2년)
제20호	제조업	'24. 8. 21.	조선소 내 선박의 화물창 내부에서 핸드레일 보수작업 중 안전대의 고리를 걸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핸드레일 소실 부분으로 8m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 징역 2년(실형, 법정구속) (법인 벌금 20억 원)
제21호	건설업	'24. 8. 21.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벽면의 할석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발판을 오르던 중 16.4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1년(집유 2년)
제22호	공동주택관리업	'24. 8. 27.	아파트관리업체 직원이 아파트 지하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배관점검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부러지며 추락해 사망한 사고	8월(집유 2년), 단, 아파트 관리소장은 안전모 증거조작 등 혐의로 징역 10월 실형
제23호	제조업	'24. 9. 10.	천장 크레인 오조작으로 흔들린 탈사기(진동을 발생시켜 주물에 부착된 주물사를 파괴하는 장치)와 본체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사고	★ 벌금 3,000만 원
제24호	제조업	'24. 9. 26.	광주 하남산단 소재 가전부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지게차 하역작업 도중 지게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	★ 벌금 5,000만 원
제25호	건설업	'24. 10. 7.	공장에서 언코일러 본체와 회전 중인 십자 형태 회전축에 피해자의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사고	1년(집유 2년)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

[2025. 6. 30. 기준] 약 46건 이상

구분	기업(업종)	선고일	사고개요	형량(원청 대표이사)
제26호	건설업	'24. 10. 16.	지방상수도 정비공사 관련, 재해자가 화물차로 폐콘크리트를 담는 작업 중 휴식을 위해 차에서 내렸다가 주차브레이크가 풀려 미끄러진 화물차와 담벼락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고	★ 무죄 (관급자재비는 중처법 적용 공사금액 50억원에서 제외됨) 단, 현장소장은 산안법위반 집행유예 인정
제27호	건설업	'24. 10. 16.	근린생활시설 건물 신축공사 중 9층 바닥을 지지하는 보하부 파이프서포트 등 바리 설치 미흡 상태에서 기둥, 보, 바닥에 대한 콘크리트 집중, 동시 타설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동바리가 변형파손되어, 2명 매몰되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은 사고	★ 징역 2년(실형, 법정구속)
제28호	제조업	'24. 10. 16.	공장에서 임의로 프로그램이 변경된 산업용 로봇을 이용하여 작업하던 피해자가 프로그램 변경으로 인해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무력화되어 로봇의 팔 역할을 하는 그리퍼와 작업받침대 사이에 몸이 협착되어 사망한 사고	징역 9월(집유 1년)
제29호	건설업	'24. 10. 30.	오수관로 매설을 위한 굴착저면에서 우수관로 설치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굴착면이 붕괴하여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한 사고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제30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24. 11. 20.	문막공장에서 인화성 물질이 남아 있던 페드럼통을 그곳에 설치된 분쇄기 내부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페드럼통에 남아있던 인화성 물질이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폭발하면서 그 충격으로 사망한 사고	징역 1년(집유 2년)
제31호	폐기물처리업	'24. 11. 27.	옥외 위험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수직배관과 수평배관을 연결하는 용접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폐유기용제에서 발생한 인화성 증기가 위 용접기의 불꽃과 반응하여 폭발하면서 사망한 사고	징역 10월(집유 1년)
제32호	제조업	'24. 12. 19.	자동차부품제조회사 사업장 내에서 플라스틱 소재의 수공구가 압축성형기에 끼어 압착되다가 튕겨 나오면서 사내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를 충격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	★무죄(구성요건 흠결)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

[2025. 6. 30. 기준] 약 46건 이상

구분	기업(업종)	선고일	사고개요	형량(원청 대표이사)
제33호	제조업	'25. 1. 7.	중량물인 코일의 분리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위 코일이 전도되면서 떨어진 언코일러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사고	징역 8월(집유 2년)
제34호	제조업	'25. 1. 9.	공장에서 블로우 성형기의 방호문을 열고 컨베이어 벨트 등에 끼인 스크랩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금형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사고	★ 징역 1년 6월(실형)
제35호	제조업	'25. 1. 21.	냉장 샌드위치 라인이 있는 공장의 배합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피해자가 혼합기의 탈착식 덮개를 개방한 채 가동 중인 혼합기에 손을 집어 넣어 배합작업을 하던 중 위 혼합기에 말려 들어가 사망한 사고	징역 1년(집유 2년)
제36호	제조업	'25. 2. 18.	압연기의 압연롤러 사이에 선재(철강재 중 봉의 형태로 열간 압연된 강재)에 끼인 뒤 튀어나와 재해자의 대퇴부를 관통하여 재해자가 출혈성 쇼크로 사망	징역 1년(집유 2년)
제37호	(원) 조선업, (하) 건설업	'25. 2. 19.	이동식타워크레인에 설치된 승강설비의 와이어로프 교체작업 중, 크레인 상부에서 역 60m 아래로 수직낙하한 와이어의 철제 소켓에 머리 부위를 맞아 사망	(원) (하) ★무죄 (건설업 50억 미만 적용 유예) 단, 조선소장은 징역 1년 실형 선고
제38호	제조업	'25. 2. 28.	항온항습기 내부 폭발로 비래된 항온항습기 철문(무게 약 69.1kg) 이 재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열흘 뒤 사망	징역 1년(집유 2년) 단, 작업총괄자는 징역 1년 실형 선고
제39호	(원) 화력발전업, (하) 노무관리용역업	'25. 3. 6.	화력발전소 석탄반입장에 석탄을 적재한 덤프트레일러를 반입하여, 적재함 후 방 게이트를 개방하지 않은 채 적재함을 계속 상승시켜 과적된 석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유압 실린더가 꺾여 적재함이 전도되어 재해자가 석탄에 매몰	(원) (하) ★무죄 (상당인과관계 부인, 운전자와 재해자 과실로 사고 유발)
제40호	건설업	'25. 4. 2.	건물 외벽에 설치된 SWC 작업발판에서 건물 창호 틀 설치 작업 중,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 연결 등 조치의무 위반으로 21m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징역 1년(집유 2년) (법인 벌금 1억 원)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

[2025. 6. 30. 기준] 약 46건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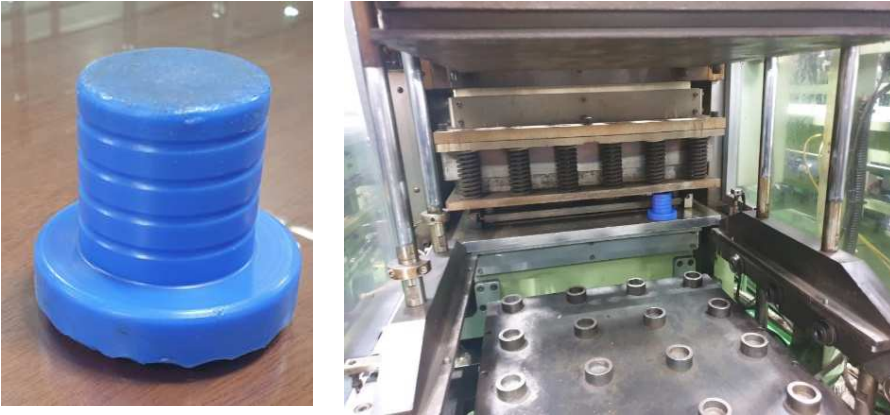
구분	기업(업종)	선고일	사고개요	형량(원청 대표이사)
제41호	조경공사업	'25. 4. 17.	골프장 확장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굴취한 소나무를 이동하여 경사지에 내려놓는 작업을 하던 중, 굴착기가 전도되어 옆에 있던 재해자가 사망한 사고	징역 10월(집유 2년)
제42호	건설업	'25. 4. 23.	카고크레인을 고소작업대 용도로 변경하기 위하여 작업대를 양중하여 임시거치된 상태에서, 재해자가 작업대 부착 작업을 위해 적재함에 오르다 작업대와 함께 2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	징역 1년 6월(집유 3년) 단, 현장소장, 하청업체 대표 징역 1년 실행
제43호	축산업	'25. 5. 14.	축사 지붕 개폐 설비의 와이어로프 교체작업을 수행하던 중,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와이어로프의 상태를 점검하던 재해자가 균형을 잃고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징역 1년(집유 2년)
제44호	건설업	'25. 5. 16.	원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현장 배관공사에 참여하고 있던 하청업체 소속 재해자가, 흙막이 지보공이 철거된 상태에 있던 굴착장소에 놓고 온 공구(임팩드릴)를 가져오기 위해 들어갔다가 흙이 무너져 사망한 사고	(원) ★무죄 (하) 현장소장 산안법 유죄
제45호	제조업	'25. 6. 12.	유해물질이 포함된 착색제를 혼합하는 화학설비인 고속 혼합기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착색제를 혼합하는 작업을 하던 중, 혼합기 본체 내부에 상체를 집어넣은 상태로 덮개 밸브 닫힘버튼을 잘못 조작하여 목부위가 끼어 질식으로 사망	징역 1년 6월(집유 2년)
제46호	건설업	'25. 6. 13.	최고기온 33.5도에서 폭염에서 작업 중 쓰러져 열사병으로 사망	징역 1년(집유 2년)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 (실형: 5건)

기업	선고일	사고개요	형량(대표이사)
OO제강	'23. 4. 26.	근로자가 방열판(무게 1.2톤)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	★징역 1년(실형)
주식회사 OO	'24. 4. 4.	다이캐스팅 기계의 내부 금형을 청소하던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여 두 개골이 파열돼 사망한 사고	★징역 2년(실형)
OOOO엔씨	'24. 8. 21.	50대 근로자 A 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고	★징역 2년(실형)
OO건설	'24. 10. 16.	건물 9층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시작되면서 하부 동바리 붕괴로 근로자가 매몰되어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친 사고	★징역 2년(실형)
OO산업	'25. 1. 9.	피해자가 운전 중인 블로우 성형기의 방호문을 열고 컨베이어 벨트 등에 끼인 스크랩을 제거하다가 금형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사고	★징역 1년 6월(실형)

무죄 판결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이행 관련 사례

무죄 사례 1: 자동차 제조업(2024. 12. 19.)



- 플라스틱 소재 수공구를 사용하다, 압축성형기 내부로 끼어 들어가 압착되다가 튕겨 나오면서 약 7m 거리에 있던 같은 협력업체 소속 종사자를 충격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이행과 사고 원인과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고, 예측 가능한 범위의 사고로 볼 수 없어 무죄 선고

무죄 사례 2: 화력발전업(2025. 2. 13.)



- 덤프트럭 기사의 오조작(후방 게이트 미개방 후 적재함 상승)으로 인한 전도
- 유해·위험요인이 사업주가 예측 가능한 범위로 볼 수 없어 무죄 선고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음
- 사고의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이 위험성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위험요인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함

무죄, 불기소 사례의 시사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행위와 중대재해의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사고의 원인이 된 위험요인이 위험성평가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없다면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종래 수사기관은 사고의 원인이 된 위험요인이 위험성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곧바로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예견가능성을 중요 요소로 보는 경향임.**



다만, **인과관계의 부정, 예견가능성의 부정이 인정되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적절한 의무 이행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예컨대, 위험성평가에서 사고의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에도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 제안, 설문조사·인터뷰 청취조사 등 복수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과 같이 순회점검 위주가 아닌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의 참여가 반드시 포함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무죄 판결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이행 관련 사례

무죄 사례 3: A건설업(2025. 5. 16.)



- 2022. 10. 17. 군산시 공사현장 하수관거 설치작업(강관 연결, 직경 20cm, 깊이 3.1m 터파기)에서 흙막이 지보공을 되메움 없이 제거한 상태에서 작업이 계속 진행되었고, 피해자가 공구를 챙기러 굴착 장소에 진입하였을 때 지반 붕괴로 매몰되어 사망한 사고
- 하청업체(B사) 작업반장 등이 공사시방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위반하여 부적절하게 작업을 수행했고, 원청(A사)은 위험성평가 등 주요 안전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일부 미비점은 있었으나 사고와의 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이 없어 무죄 선고

- 원청과 하청의 형사책임 분리 인정: 원청과 하청의 책임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하청만 유죄, 원청은 무죄로 판단한 첫 사례, 단순히 도급인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추정할 수 없다는 기준 제시
- 사고와의 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형사책임이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적용함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무죄 판결(2025. 5. 16. 선고) : 책임주의 원칙상, 하청은 유죄, 원청은 무죄로 판단한 최초 사례

사안 개요(2022. 10. 17. 사고발생)

A사 (원청)

甲(대표이사) : 경영책임자
乙(현장소장)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B사(하청)

丙(현장소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丁 : 작업반장
戊 (작업자) : 재해자

하수관거 정비
사업 현장,
배관공사 하청

* B사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24. 1. 26.까지)



사고 개요

- 원청 A사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현장의 배관공사에 하청업체(이하 "B회사")가 참여
- 땅을 굴착해서 하수관을 설치하고 다시 흙을 되메우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땅이 굴착된 상태에서 흙막이 지보공 판넬을 굴착된 땅 옆면에 설치하여 지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함.
- 그런데 하청 B회사 작업자들은 일부만 흙이 되메우기가 된 상태에서 흙막이 지보공을 해체하여, 다음 공사 구간으로 그 흙막이 지보공을 이동시켰음.
- 재해자는 배관 연결 작업을 마친 후 실수로 굴착 장소에 공구(임팩드릴)을 놓고 왔는데, 이를 뒤늦게 인지하고 충분한 흙이 되메워지지 않은 채 흙막이 지보공까지 해체된 상태였던 2.5미터 깊이의 굴착 장소에 들어가 위 공구를 챙기다가, 주변 토사와 토석이 갑작스럽게 붕괴되어 매몰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무죄 판결(2025. 5. 16. 선고) : 책임주의 원칙상, 하청은 유죄, 원청은 무죄로 판단한 최초 사례

법원의 판단

원청 현장소장 산안법, 업과사 무죄 판단 근거

-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지시하였거나, 알고도 묵인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 가능한데, 그에 관한 증거 없음
-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A사가 아닌 B사임
- 공사시방서,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서에 '되메움-판넬뽑기-다지기-되메움' 순으로 반복하여 작업하도록 규정
- 이 사고는 하청 B사가 위 규정에 반하여 작업하던 중, 우연히 재해자가 공구를 가져오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발생함.
- 오히려 원청 현장소장은 사전 회의에서 굴착 깊이에 따른 가시설 설치 및 해체 시 작업 순서 준수를 강조

원청 대표이사 중처법 무죄 판단 근거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위험성평가) 의무 이행 인정(시행령 제4조 제3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의무 이행 불인정(제5호 나목), 단 사망사고와 상당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부정

선고 결과	원청 대표이사	무죄
	원청 현장소장	무죄
	하청 현장소장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기타	특별감독시 단순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후임 원청 현장소장, 원청 법인 각 벌금형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무죄 판결(2025. 5. 16. 선고) : 책임주의 원칙상, 하청은 유죄, 원청은 무죄로 판단한 최초 사례

의의 및 시사점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가 일부 미흡하더라도,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중처법 불성립 재확인
-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원청과 하청의 책임을 동일하게 인정하는 그 동안의 경향에 제동
-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원청이 하청에 대하여 충실히 관리감독하였다면 예견불가능했던 사고에 관해서까지 무조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님

즉 법원은 산안법상 원청의 안전조치의무(법 제63조), 하청의 안전조치의무(법 제38조)를 구분하여 해석함으로써, 하청의 유죄 판단에도 불구하고, 원청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는 첫 판결을 선고함



울촌 **중대재해**센터 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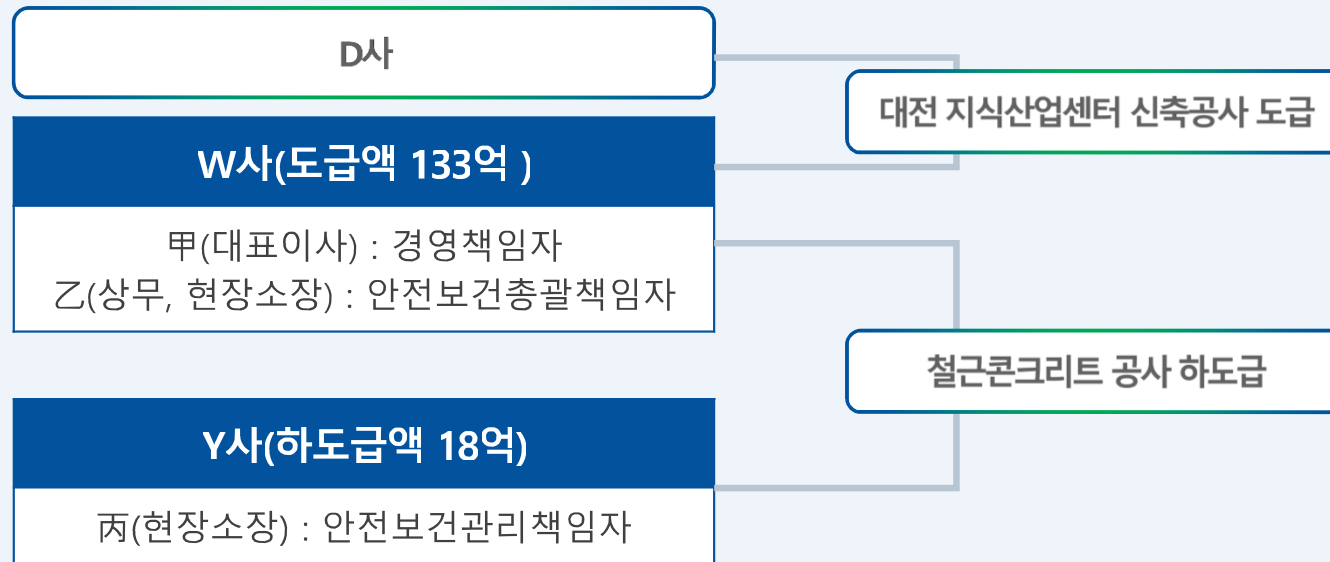
김현근
변호사

중대재해 5호 무죄 판결 분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무죄,
하청 유죄, 운명이 갈린 이유는?**

최신 판결(2025. 6. 13. 선고) : ‘열사병’ 중대재해처벌법 최초 인정 사례

사안 개요(2022. 7. 4. 사고발생 / 2025. 6. 13. 선고)



*Y사는 당시 도급액이 50억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2024. 1. 26.까지)

원청인 W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청업체 Y사 소속 근로자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열사병으로 사망

의무위반 유형

- ①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
- ② 중대산업재해 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 각 불이행

선고(중처법)

원청(W사) 甲(경영책임자)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W사 : 벌금 8,000만원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안전조치 의무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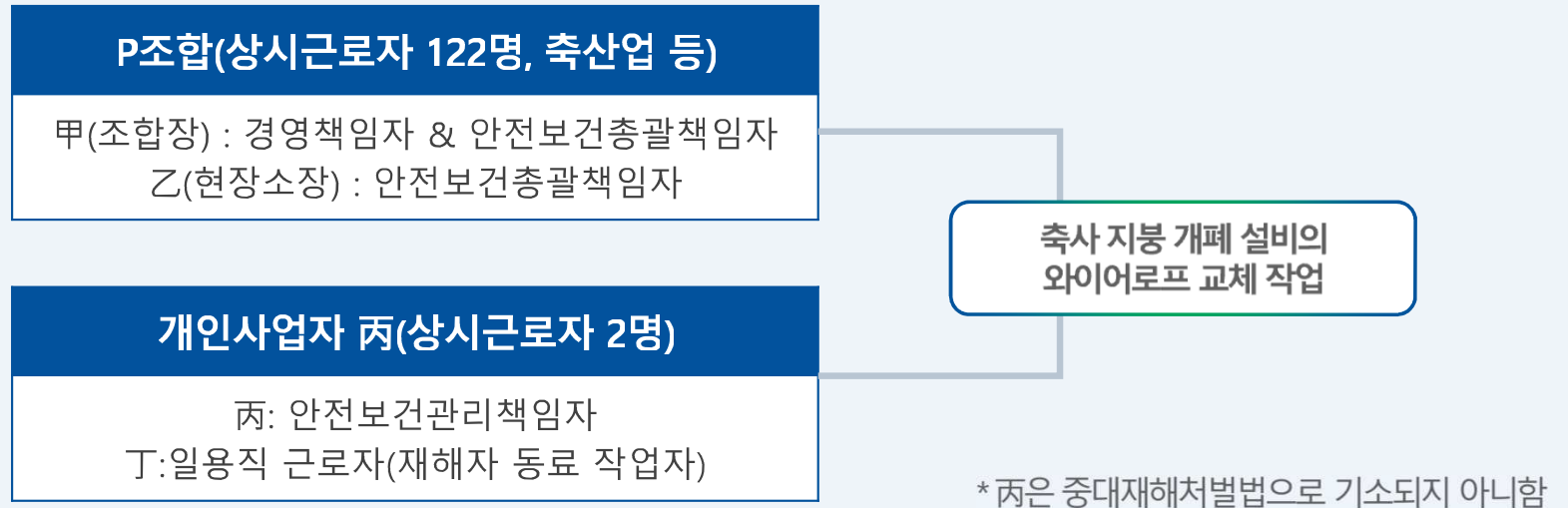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안전조치 의무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내용

폭염 노출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휴식 제공 의무 위반
폭염 노출 옥외 장소에서 작업 하는 경우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 제공 의무 위반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	소금 및 깨끗한 음료수 등의 비치 의무 위반

- ❏ 열사병으로 종사자 사망 시 즉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가목) :
열사병으로 인한 중대재해에 관한 최초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인정 사례
- ❏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발생 등 중대산업재해 위험을 대비한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음(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및 제8호 위반 사실 인정).
- ❏ 그로 인해 작업 중단, 휴식시간 부여 등의 대응조치를 할 수 없게 만들었음(상당인과관계 인정하여 유죄).

사안 개요(2023. 1. 21. 사고발생 / 2025. 5. 14. 선고)

사안 개요(2023. 1. 21. 사고발생 / 2025. 5. 14. 선고)



❏ P조합(원청)으로부터 와이어로프 교체 작업 공사를 도급받은 丙이 고용한 근로자가 고소작업대에서 균형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

의무위반 유형

- ①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 방침 설정 의무 ②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 의무
-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권한, 책임 부여 및 평가기준 마련 의무 ④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의무
- ⑤ 중대산업재해 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의무 ⑥ 협력업체 산재 예방조치 능력 및 기술 평가기준 마련 의무 각 위반

선고(중처법)

원청(P조합) 甲(경영책임자)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P조합 : 벌금 3,000만원

최신 판결(2025. 5. 14. 선고) : '건설공사발주자' 판단 법리 실시 사례

피고인들의 주요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

1 경영책임자 등이 아니라는 주장 : 배척(경영책임자 등에 해당)

- 조합정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축사의 유지보수 업무도 조합장의 고유 업무로서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

2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책임이 없다는 주장 : 배척(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

- 아래 대법원 판결 법리 원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 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참조)
- 따라서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도 인정되고, 건설공사발주자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에 대해 면책될 수도 없음

3 피해자가 자의로 뛰어 내렸을 가능성 등 상당인과관계 부정 주장 : 아래 논거 등에 근거하여 배척

- 정신과 약이나 대인공포증 약을 먹는다는 사정만으로 자의로 뛰어 내렸을 가능성 높다고 보기 어려움.
- 동료 작업자도 피해자가 일부러 뛰어 내릴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
- 자의로 뛰어 내릴 결심이라면 작업준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

[참고] 건설공사발주자에 관한 법원의 주요 판단례

[2025. 6. 30. 기준]

기업	1심 판단	2심 판단	3심(대법원) 판단	비고
인천항만공사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확정)	원심 파기 건설공사발주자 판단 법리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J사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대법원 진행 중	원심 파기
Y사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확정)	-	원심 파기
D사	건설공사도급인	항소심 진행중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 (2024. 11. 27. 1심 선고)
H사	건설공사도급인	항소심 진행중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 (2025. 2. 19. 1심 선고)
P조합	건설공사도급인	항소심 진행중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 (2025. 5. 14. 1심 선고)

인천항만공사 대법원 판결 이후 건설공사발주자 해당 여부는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되고 있음
제반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규범적으로 판단되므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쟁점임
따라서, 상급심의 결론을 쉽게 단정할 수 없으므로, 관련 판결의 추이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음

건설공사발주자 VS 도급인 구분 총정리 및 실전편



김관우 수석 전문위원



판결8호 : OO산업(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기각/2023.11.3)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형법 제13조, 제14조),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과실로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야기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관하여 대법원은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경우'에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2항에 의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관한 이들의 고의가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중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한 것으로 과실범을 그 처벌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는 그 처벌 대상이 다르다.



법원 "중대재해법, 원청에 가혹할 정도의 형사책임 추궁"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심판, 법원이 처음으로 청구

2022년 3월 부산 연제구 한 업무 시설 신축 공사장, 박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 회사에서 주차타워 내부 단열 공사를 하청받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도중 설비에 끼어 숨졌다. 이 사고로 원청 사업주인 박씨는 이듬해 5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항소심 선고를 앞둔 작년 8월 자신에게 적용된 법 조항(4조 1항 1호·5조·6조 1항)이 "헌법에 위배 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하라는 4조 1항 1호는 어떤 재해를 예방하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명확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또 "5조는 전문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원청 업체가 전문성을 가진 하청 업체에 업무를 맡긴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중대 재해에 관해 가혹할 정도의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6조 1항의 형량에 대해선 "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하청 소속 근로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원청 사업주는 훨씬 중한 처벌을 받는다"며 "책임주의·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법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심판 제청 이유

신청 조항	사업주의 재해 예방 의무(4조1항1호)
재판부 판단	"포괄적 규정으로 어떤 재해의 예방인지 명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 위배)
신청 조항	하청에 대한 원청의 재해 예방 의무(5조)
재판부 판단	"원청에 가혹한 형사책임 추궁해 경제활동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 (과잉금지 원칙 위배)
신청 조항	사망 사고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6조1항)
재판부 판단	"직접 책임있는 하청 근로자보다 사업주나 원청에 더 중한 처벌" (책임주의·평등 원칙 위배)

작년 1월 법 적용 대상 범위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중소기업들까지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산업 현장에선 작업 일지나 안전성 평가 자료 등 수십 종류의 안전·보건 서류를 준비하는 데 드는 부담도 늘었다. 안전 관리자들이 서류 작업에 몰두하다 보니 현장 시설물이나 근로자 안전을 점검할 시간이 줄었다는 곳도 있다.

대형 인명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반응도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 능력 평가 상위 20위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숨진 근로자는 35명으로, 이 법이 처음 시행된 2022년(33명)과 큰 차이가 없었다. 앞서 **작년 4월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인 등도 중대재해법 적용 범위(3조)와 사업주의 조치 의무(4조), 형량(6조 1항)을 규정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다.**

한편, 중대재해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 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과거 해당 조항이 적용된 사건까지 소급해서 효력을 잃게 된다. 이럴 경우 이미 이 법으로 처벌받은 사업주 등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위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중대재해법 관련 재판은 계속되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도 계속 진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재판 실무 축적되고, 위험 쉽지 않아 철저한 대비 필요

[관련 기사] '중소기업인 305명, 현재에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연합뉴스 2024. 4. 1.자 기사)

- 중소기업인 300여명이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렵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9곳과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이하 생략

[기사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40401033500030>

산업안전 정책의 규제 강화, 안전에 대한 국민의 컨센서스 발전 중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험과 관련하여 다수의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사건 장기간 계류 중

'위헌결정'이라는 요행에 기댈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재해 예방의 공통의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야 할 때



사전 Compliance 중요성!!

사업장 특성 반영 맞춤형 검토

- 회사 사업수행 실태에 따른 사업장별/업무별/근로자별/수급인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를 면밀히 검토
- 사업수행 실태 분석을 통한 안전보건관계 법규상의 지위 확인(도급인 또는 발주자 등) 및 법정 요구사항 이행 여부 분석

안전보건관리체계 적법성 검토

- 회사에 구축되어 있는 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 적합한지 검토
-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인력/조직,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검토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수준 점검

- 중대재해 발생 등 유사 시에 귀사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령, 노동부 및 검찰 등 관련 기관의 해설서 등 자료, 타사 우수사례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수사 시 쟁점 분야 및 수사 경향, 최근 기소 사례, 판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에 따라 평가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방안 제시

- 관련 규정(경영책임자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대응 master 규정 등), 주요 서식, 제도운영 방안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 제시

- 다양한 업종의 150여개 기업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컴플라이언스 자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각종 중대산업재해 사건들(100여건)에 대한 수사대응 등의 **경험을 통해 Compliance 수행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분야에 업무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최소한의 기간과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임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 율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삼성동)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법무법인(유)
율촌